

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유·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서, 재학 기간 동안 교육봉사 과목 수강 및 학점 이수 조건에 맞추어 총 60시간(1일 최대 8시간)을 실시한다. 형식 조건은 ‘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에서’이고 내용 조건은 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-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함’이며,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. 주로 현장 유치원 및 학교에서 실시하며, 그 계획, 시행, 인정 등의 과정과 결과를 본교의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교과목(2학점)으로 운영·관리한다. 특히, 2017학년도부터 기존의 일반 교육봉사 외에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봉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.

#### ○ 교육봉사활동 안내

- 적용 대상: 사대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부터 실시
- 교육봉사 시간: 총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 이수
- 교육봉사 완료 시기: 교육실습 실시 이전 학기까지 이수 완료 권장

#### ○ 「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」 교과목 학점

- 학점 및 성적: 2학점, S/U
- 총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이수 후 또는 이수 완료 예정 학기에 「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」 교과목을 수강 신청함. (교육실습 실시 이전 학기까지 60시간 이수 완료 권장)
- 총 60시간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【서식 1~5】를 「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」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기 제출기간(수강신청자에 한하여 공지)에 학생 소속 제출처에 제출하며, 봉사활동 확인 후 학점을 인정 받음.
  - 사범대학: 전공기초(36937), 사범대학 학과별로 개설
  - 비사범계 교직과정: 비사범계 교직과목 「교육봉사활동」(37006)으로 개설

|        | 사범대학생       | 교육대학원생    |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심의 담당자 |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| 교육대학원 부원장 | 교직부장       |
| 서류 제출처 | 각 학과        | 교육대학원 행정실 | 교직부        |

## ○ 교육봉사기관 섭외

- 교직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교육봉사자 모집에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유치원, 초등학교, 중·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섭외함.

## ○ 교육봉사기관 가능 기관

- 2017학년도 선발자부터 유치원 및 전국 시·도교육청의 유·초·중·고등학교만 교육봉사 가능 기관으로 인정
- 2020학년도 ~ 2022학년도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, 전국 비영리 기관을 교육봉사 가능 기관으로 확대 인정함
- 2023학년도부터 전국 시·도교육청의 유·초·중고등학교와 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비영리 기관 6개 기관(교내 기관이므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육봉사 내용을 철저히 감독 관리 가능)만 인정하기로 함.
- 2024학년도부터 전국 시·도교육청의 유·초·중고등학교와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만 인정하기로 함.

## ○ 교육봉사 인정 주요 히스토리

|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~2019-2                    | ■ 전국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봉사만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0-1<br>2020-2<br>2021-1 | ■ 전국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교육봉사 뿐만 아니라,<br>전국 지역아동센터, 복지관 등 <u>비영리 기관 교육봉사기관 인정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1-2<br>2022-1           | ■ [실비 지급 가능]<br>교육봉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나,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, 시내 교통비와 점심 식대 명목으로(교육봉사 시간 1일 4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함) <u>예외적으로 10,000원/일 내외의 금액</u> 을 받을 수도 있다.<br>■ <u>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 교육봉사 추가</u> |
| 2022-2                     | ■ 전국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+ 전국 지역아동센터, 복지관 등 <u>비영리 기관 교육봉사기관 인정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3-1<br>2023-2           | ■ 전국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+ 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<u>6개 비영리 기관만 교육봉사기관으로 인정</u> (단, 사범대학은 학과별로 인정되는 비영리 기관이 다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4-1<br>2024-2           | ■ 전국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+ <u>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*</u> 만 <u>교육봉사기관으로 인정</u> (단, 사범대학은 학과별로 인정되는 비영리 기관이 다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

- 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기관(5개):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, 서대문구 가족센터, 성산종합사회복지관, 이대복지어린이집,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· 평생학습관: 본교와 협약 맺은 특정 프로그램 「어린이 도서관학교 OO톡톡」에 한하여 인정('OO'은 과목명(예: 수학톡톡, 과학톡톡 등)으로, 매 학기 개설 과목 및 진행 기관 상이) 2024-1학기: 강서도서관, 송파도서관, 영등포평생학습관 2024-2학기: 강서도서관, 고척도서관, 동작도서관, 송파도서관 2025-1학기: 고척도서관, 노원평생학습관

○ 사범대학 학과별 교육봉사 인정 기관

| 학과        | ①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·초·중등학교 | ②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학과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공학과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영어교육과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초등학생 이상 대상 기관만 가능<br>(유아 대상 기관 제외: 『이대복지어린이집』 제외) |
| 사회과교육과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어교육과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초등학생 이상 대상 기관만 가능<br>(유아 대상 기관 제외: 『이대복지어린이집』 제외) |
| 과학교육과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학교육과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아교육과     | 가능(유치원만)             |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초등교육과     | 가능(초등학교만)            |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수교육과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본교 산하 사회복지시설만 가능<br>(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·평생학습관 제외)       |
| 교육대학원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대학 교직과정 | 가능                   |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학과에 따라 위의 비영리 기관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, 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드시 소속 학과에서 교육봉사기관 적격 여부 심의를 받아야 함.

○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

○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 절차

아래의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자 추가 제출서류 ①과 ②를 심의 담당자(제출처)\* 제출 → [심의 결과] 승인 → 해당 기관 교육봉사 가능

※ 심의 담당자 및 제출처

|        | 사범대학생       | 교육대학원생    |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심의 담당자 |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| 교육대학원 부원장 | 교직부장       |
| 서류 제출처 | 각 학과        | 교육대학원 행정실 | 교직부        |

-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자 추가 제출 서류 **[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]**  
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(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)

### 3 교육봉사활동 시행

#### ○ 교육봉사활동의 종류

- 교육봉사활동이란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·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함.
- 교육봉사 시행 내용은, 반드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재능을 활용한 봉사로 기재되어야 함. 즉, 일반적인 봉사 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.

##### ●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예시

학습부진아 개별 지도, 진로/진학 및 학업 상담 지도, 기초 연산 교수-학습 등 학생에게 교수·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봉사 등 (봉사 내용에 지도라는 단어가 있어야 함)

##### ●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예시

자율학습감독, 돌봄교실 간식배식, 도서 정리, 아동 안전도우미 활동 등

#### ○ 교육봉사활동 시간

-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봉사 가능
- 각 회당 봉사 시간을 계산할 때 1차시를 1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함. 1차시의 시간은 초등학교 40분, 중학교 45분, 고등학교 50분임.
- 교육봉사 활동 시의 이동 시간, 사전 교육 및 준비 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 시간만을 인정한다.

#### ○ 유의사항

- 봉사기관의 일정 및 학기 운영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봉사를 신청 후, 취소하지 않는다.
- 교육봉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, 시내 교통비와 점심식대(1일 4시간 이상일 경우) 등으로 예외적으로 10,000원/일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.